

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(제49조제2항제3호 관련)

1. 설치

- 가.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는 IIIA, II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
- 나.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의무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.
- 다. 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게 설치할 것

2. 설치위치

- 가. 너비
 - 1)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
 - 2) 기준축 방향에서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너비가 1,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나. 높이
 -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. 다만,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,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.
- 다. 길이
 -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

3. 관측각도

- 가. 수평각
 -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내측 30도·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
- 나. 수직각
 -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상측 15도·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. 다만,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.

4. 추가적인 요구사항

-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.

